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 7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9.
제 출 자	거창군수

□ 개정이유

- 004 6 30 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 시까지 한시기구 시한을 연장하고
- 이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
-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재해 · 이형화로 인해 읍면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 · 이 방재인력을 보강하고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2)
 - : 617 이 ⇒ 630 (13)
 - : 14 이
 - ※ 총 원 : 631 이 ⇒ 644 (13)

□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 :
-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【 】
- 읍면방재인력() 이장지침 【 】
-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· 이원 보강지침 【 이남도 행정과-6851(2004. 8. 3) : 】

지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 조종 “ ” “ ” , 같은 조 제1 조종 “ ” “ ”
으로 한다.

- ①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)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8 3 2004 6 30 !까지로 하되 2004 7 1 , 1 2005 6 30 !까지로 하되 2005 7 1 , 1 !은 최초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하고, 3 2007 6 30 .

신 · ㄴ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 조 ()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31</u> }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: <u>617</u> } 2. ()	제2 조 ----- -----<u>644</u> } -----. 1. ----- : <u>630</u> } 2. ()